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25조에 따라 제2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3월 23일(월) 오전 10시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네이버 그린팩토리 2층 Connect Hall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27기(2025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1 참조]
 - 제2-1호 의안 :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 제2-2호 의안 : 기타 상법 개정 반영의 건
-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김희철 선임의 건 [별첨2 참조]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이배 선임의 건 [별첨 3 참조]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 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계좌(명부)주주로 전자등록 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해당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6년 3월 13일 9시 ~ 2026년 3월 22일 17시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민간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7.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사항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내 소집공고 또는 당사의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공시에 게시된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보내실 곳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95 네이버 1784, 자본시장실(우편번호 13561)

※ 금번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별도의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으며,
정기주주총회 관련 문의사항은 1588-383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네이버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수 연

직인
생략

[별첨 1] 정관 일부 변경 세부내역

●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36 조(이사의 선임) (중략) ③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6 조(이사의 선임) (중략) ③ <삭제 2026.09.10>	- 개정 상법(2026. 9. 10. 시행 예정) 제 542 조의 7 제 3 항에 의거,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이 2 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관련 조항 삭제

● 기타 상법 개정 반영의 건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41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1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23>	- 현행 상법 제382조의3 제1항에 의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가 추가된 점 반영
제 25 조(소집통지 및 공고) (중략) ④ 이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하는 <u>사외이사</u>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5 조(소집통지 및 공고) (중략) ④ 이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하는 <u>독립이사</u>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07.23>	- 개정 상법(2026. 7. 23. 시행 예정) 제542조의8 제1항에 의거, 사외이사가 독립이사로 변경된 점 반영
제 38 조(이사의 보선) (중략)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3.30>	제 38 조(이사의 보선) (중략) ② 독립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3.30, 개정 2026.07.23>	
제 48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중략)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u>사외이사</u>이어야 한다. (중략)	제48조(감사위원회의 구성) (중략)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u>독립이사</u>이어야 한다. <개정 2026.07.23> (중략)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의 목적
(신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6.03.23>	- 개정 상법((2026. 9. 10. 시행 예정) 제542조의12 제2항에 대비하여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상향 관련 조문 정비 반영
제 26 조(소집지)_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제26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여 개최한다. <신설 2027.01.01>	- 개정 상법(2027. 1. 1. 시행 예정) 제 542 조의 14, 15에 의거, 일정 규모의 상장법인의 경우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가 의무화됨에 따라, 현장주주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제 32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중략)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중략)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7.01.01>	
(신설)	부칙 이 정관은 202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4항, 제38조 제2항, 제48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36조 제3항의 규정 삭제는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6조, 제32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 개정에 따른 부칙 개정

[별첨 2] 사내이사 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요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채납 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김희철 (1976.03.29)	- (현) NAVER CFO (2025~) - NAVER CV Center 임원 (2019~2025) - NAVER 재무관리 리더 (2017~2019) - NHN(NAVER) 재무기획실 입사 (2003) -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1996~2003)	이사회	없음	-	없음	없음	없음

김희철 후보자는 IT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재무/경영관리 전문가로서, 2025년 4월 CFO로 선임된 이후 네이버의 사업/경영 및 거버넌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주요 투자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무 책임자로서 검토/조율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네이버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투자 전략과 지속성장이 가능한 재무 건전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이사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되어 이사회에서 신규 선임을 추천합니다.

[별첨 3]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요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 와의 관계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채납 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김이배 (1963.07.17)	- (현) 덕성여자대학교 회계학전공 교수(2008~) - (현)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2026~) - (현) 국민연금 ESG 경영위원회 위원(2023~) - 한국회계정책학회 회장(2019) -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2018) -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자본시장분과위원장(2018~2021) -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2012~2014) - 숭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경영학 박사(2005)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 석사(1995)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영 학사(1991)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이사회	없음	-	없음	없음	없음

김이배 후보자는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한국회계정책학회 회장, 덕성여자대학교 회계학 전공 교수 등을 역임하여 회계 및 재무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국제강 감사위원장, 농협생명보험 감사위원장 등 다양한 경험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 년의 임기 동안 약 20 여건의 심의, 보고 안건 논의에 참여하여 감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바 있으며, 재선임을 통해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법 개정에 의해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 선출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 직무 수행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고자 추천합니다.

[그 외 안내 사항]

□ 주주총회 참석시 지참물 안내

주주 본인은 본인의 신분증이,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각각 지참물로 요구되며, 신분증 등 미지참 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1)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2) 위임인(주주)의 성명, 소유 및 위임 주식 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3) 위임인(주주)의 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는 중복주주 판별을 위해 현장에서 육안 확인 후 즉시 삭제하며, 별도 수집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주식회사 27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위임장

본인은 2026년 3월 23일에 개최되는 네이버 주식회사 제27기 정기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에서 권유자 네이버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최명환, 강재은, 강현준, 권기문, 김소윤, 김연준, 김준엽, 김홍비 중 1인을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 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주주번호:
2. 소유주식수: 주
3. 의결권 있는 주식수: 주
4. 위임할 주식 수: 주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

번호	주주총회 목적사항	찬성	반대
제1호	제27기(2025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제2-2호	기타 상법 개정 반영의 건		
제3호	사내이사 김희철 선임의 건		
제4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이배 선임의 건		
제5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위임
 - 주주총회 시 새로이 상정된 의안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목	지시내용

※ 각 의안에 대한 찬반 표시가 분명하지 않은 위임장이나 백지 위임장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주명: (인)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2026년 월 일 시

네이버 주식회사 27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전자위임장

본인은 2026년 3월 23일에 개최되는 네이버 주식회사 제27기 정기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에서 권유자 네이버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최명환, 강재은, 강현준, 권기문, 김소윤, 김연준, 김준엽, 김홍비 중 1인을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의사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 1. 주주번호:
- 2. 소유주식수: 주
- 3. 의결권 있는 주식수: 주
- 4. 위임할 주식 수: 주
-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의사표시 여부

번호	주주총회 목적사항	찬성	반대	기권
제1호	제27기(2025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제2-2호	기타 상법 개정 반영의 건			
제3호	사내이사 김희철 선임의 건			
제4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이배 선임의 건			
제5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위임
 - 주주총회 시 새로이 상정된 의안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 대리인은 해당 의안에 대해 기권으로 처리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목	지시내용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주명: (인)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2026년 월 일 시